1. 개정이유

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출·퇴근 등 근무여건 지원을 위해 정해진 차고지 외 근무교대를 허용하며, 택시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근무교대 등의 사유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음추즉정 하는 경우,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음주여부를 측정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훈령　제2022-1568호

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 중 차량을 주차장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,”을 “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 중 차량을 주차장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
2.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출·퇴근 등을 위해 정해진 차고지 외에서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

부　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운수종사자 음주 확인·검사) ① ~ ③ (생 략)	제3조(운수종사자 음주 확인·검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 중 차량을 주차장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,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음주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.	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----------.
<신 설>	1.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 중 차량을 주차장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
<신 설>	2.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출·퇴근 등을 위해 정해진 차고지 외에서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